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49
----------	-------

발의연월일 : 2025. 12. 9.

발 의 자 : 김형동 · 임이자 · 조지연
안철수 · 이종배 · 한지아
강명구 · 윤상현 · 고동진
박정하 · 우재준 · 박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 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다.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및 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신고사건의 제기·조사·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 규정 및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감독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근로감독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을 말한다.
3. “사업장 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

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가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자·구술·우편·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근로감독관의 임면 등)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3.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시하는 직무

제6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尋問)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서류·정보저장매체 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의 복제본 및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시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시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보고, 출석요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장 근로감독관 교육과 지원 등

제10조(근로감독관 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근로감독관의 보호) 고용노동부장관은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근로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소송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근로감독관이 직무의 수행

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장 감독

제16조(사업장 감독의 종류) ① 사업장 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및 재감독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 대상 등 사업장 감독의 종류별 요건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장 근로감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장 근로감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종합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감독결과 조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사건 및 수사

제19조(신고사건의 제기)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사건의 조사) ①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전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신고인 외의 다수 근로자가 동일내용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 서류 사본의 요구 및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사건의 관할이 전국의 여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걸쳐 있어 통일적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사건 조사결과 처리)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사건 심사위원회) ① 이미 처리된 사건이 다시 접수된 재신고 사건 또는 폭언, 폭행, 협박, 스토킹 등 불법·부당한 행위를 동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등 특이 민원에 관한 심사

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신고사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7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등을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

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수행 중인 직무는 이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수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보칙”으로 한다.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 중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를 “제100조를 위반한 자”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④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감독관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⑥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

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각각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⑦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⑧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한다.